



##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에 관한 공청회 하도급대금 지불보증 반드시 도입해야

건설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설송웅 의원이 마련한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주목을 받았다.

다음은 이날 참석한 학·연·관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註]



건설산업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7일 국회에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설송웅 의원이 마련한 「건설산업 위기극복과 구조개혁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날 설송웅 의원은 기초발언을 통해 「내년에 시행 예정으로 있는 최저가낙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증제도, PQ제도, 내역입찰제도 등 건설관련제도의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처럼 공공공사의 물량이 부족한 상황

서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덤핑입찰이라도 감행해서 일단 수주하고 보자는 업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위기상황에서 덤핑입찰이 만연하게 된다면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 정략형 건설경제국장은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업체 간에 기술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업체가 수주도록 해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발주자는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공사는 공사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도록 하여 업체 부도시 보증기관이 공사를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락형 국장은 「시장의 확대 추이를 보아 이행보증증권의 취급대상을 손해보험사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 추욱호 시설국장은 「최저가낙찰제와 관련 건설업계 수주 관행상 덤핑낙찰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현재와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당장 시행에 들어가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공사이행보증제 시행과 관련 발주자가 보증기관에게 역무대행 또는 금전보상을 선택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설공제조합 김선일 업무이사는 「공사이행보증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시공업체·보증기관이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면서 「보증신청업체가 낙찰 받은 금액으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낙찰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 보증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행보증제 운영방안

김명수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건설보증의 여건 미성숙 등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행보증증권을 단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현재 건설산업의 여건을 감안할 때 연대보증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연대보증인제도도 당분간은 병행해 이용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유의할 점은 이행보증증권의 도입 목적 중의 하나가 건설공사의 안정적 시공을 보장받는데 있다면 하도급대금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에서도 1935년 밀러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건설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의 임금과 자재대금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해 공사계약시 건설업체는 반드시 이행보증증권과 함께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설업체 신용평가제도와 관련 신뢰성은 정교한 평가기법이나 평가모델의 개발을 통해 확보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양질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신뢰할 만한 평가기관으로 명성을 얻음으로써 가능하다.

자본시장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IMF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금융환경도 담보



나 보증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신용에 의한 자금조달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신용평가 대상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장기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시공능력공사 대신 경영평가제도를 도입, 공공발주관서가 이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게 한다.

## 최저가낙찰제 성공 조건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건설산업은 현재 심각한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으며, 이같은 상황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은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비난도 있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이행보증제도와 PQ심사를 전제로 한 최저가낙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요행에 의한 복권당첨식 낙찰제도의 탈피·건설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공공건설사업의 효율화·낙찰제도의 국제표준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 최저가낙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지만 독점적인 건설보증시장·변별력 있는 엄격한 PQ심사기준의 미 확립 및 발주자에 의한 저가심사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최저가낙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타당성이 있다.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2000년 4월)」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00년 8월)」에서 두 차례나 단계적인 최저가낙찰제 도입을 천명했고, 운찰제(運札制)를 탈피해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방침대로 내년부터 천억원 이상 PQ공사를 대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보증기관이건 입찰자건 간에 기본적인 경영전력은 한건 한건 공사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총체적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낙찰제의 도입과 단계적인 확대방침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참여자에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